

2015년도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신청요강
2015 Korean Studies Grant Application Guidelines

2015. 2

한국학중앙연구원
The Academy of Korean Studies

목 차

I. 사업목적	1
II. 사업내용	1
III. 지원분야	
A. 강의지원	4
B. 학술연구	6
C. 학술회의	10

I. 사업목적

해외 한국학 연구기관 및 연구 인력의 제반 학술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한국학의 국제적 보편성을 도모함.

II. 사업내용

A. 사업규모: 1,803백만원

B.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

지원 분야	지원대상	제출서류	지원자격
강의 지원	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한국학 강의를 담당할 강의교원 지원	a. 원본 신청서 1부 (양식1-1, 1-2) ※ 연장 신청 시 "추천서", "강의평가서"(양식1-3) 제출 b. 강좌 책임자 CV c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양식5) d. KSNET 설문지(양식4)	-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한국학 관련 강좌책임자
학술 연구	해외한국학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한국학 관련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	a. 원본 신청서 1부 (양식2-1, 2-2) b. 과제 책임자 CV c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양식5) d. KSNET 설문지(양식4)	- 외국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- 최근 4년(2011. 2~2015. 1) 이내 연구실적 2건 이상
학술 회의	해외한국학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한국학 관련 학술회의 개최 지원	a. 원본 신청서 1부 (양식3) b. 회의 책임자 CV c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양식5) d. KSNET 설문지(양식4)	- 외국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*단, 2015. 6~2016. 5 기간 중 해외 개최 학술회의에 한함

※ 2013년부터 학술지 발간, 출판 지원, 연구 장려 분야는 폐지됨

※ 자세한 내용은 각 지원 분야 요강을 참고하기 바람

C. 심사 과정 및 결과발표

a. 심사과정

- 1) 요건심사: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
- 2) 전문심사: 전문가에 의한 신청서 내용 심사
- 3) 종합심사: 선발 및 예산조정



b. 결과발표: 2015년 5월 중 이메일 개별 통보

D. 지원 방법

- 본원 양식에 따라 반드시 총장 또는 학과장의 서명을 받아 신청함.
-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지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을 받아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함.
-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도록 권장함.
(http://www.korean.go.kr/09_new/dic/rule/rule_roman.jsp)
- 강의과제교수 신청의 경우 2015년 5월경 본원 온라인 과제공모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진행함.
-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9조 (연구윤리 준수 의무)에 따라 청탁을 하거나 그 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36조(위반사항에 대한 제재)에 근거하여 처리함.

E. 제출 서류

- a.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자 서명을 득한 후, 신청서와 관련서류 일체를 스캔하여(PDF형식으로 저장) 이메일 제출함
※ 반드시 수기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, 서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되지 않음 (신청서에 타이핑으로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 접수 불가)
- b. 원본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
- c. KSNNet 정보 등재를 위해 별도로 첨부된 설문지(양식 4)의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함

F. 제출 마감일: 2015. 3. 15(일)까지 이메일 접수

- ※ 이메일 접수(한국시간 기준)를 기준으로 하며, 마감일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(우편접수는 받지 않음)

G. 문의 및 제출처

-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: grant@aks.ac.kr
- 전화: +82-31-709-9843
- 팩스: +82-31-709-9945
- ※ 공모와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받습니다.
- ※ 신청기간 및 심사기간(2015년 2월~5월) 동안 방문 면담은 받지 않습니다.
- ※ 이메일 제목에 <해외한국학지원사업 신청서>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III. 지원분야

A. 강의지원

1. 지원내용 및 기간

- a. 지원내용: 한국학 관련 강좌 진행을 위해 현지 대학에 강의교수를 선정하여 파견하고 강의파견교수에게 현지생활비, 교재연구비, 현지정착비, 왕복항공료 및 해외여행자보험을 지원함. (단, 현지정착비 및 왕복항공료는 신규파견 시 1회에 한하며 현지신청자는 제외함.)
- b. 지원기간: 1년
※ 해당기관이 한국학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고 강의파견교수에 대한 처우나 편의제공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 현지 실사 및 MOU 체결 등을 통해 중장기 지원에 대한 협의도 가능함

2. 신청자격 : 외국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한국학 관련 강좌책임자

- a.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자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.
 - 본원, 교육부, 한국연구재단 등 국내 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결과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제재 기간 중인 자
 - 국내 학술진흥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강의 파견자가 파견기관의 관리 미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.

3. 강의지원 참고사항

- a. 강의파견교수의 체재비 일부 보조 및 편의제공에 있어 적극적인 기

관의 경우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함 (예: 무료숙소 제공 또는 숙소 보조비 지원, 연구실 제공, 강의 관련 사무용품 제공, 교내시설이용, 강의수당 보조, 비자발급 관련 행정지원 등)

- b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좌의 강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함
 - 한국학 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원생의 수업 및 학위지도
 - 한국문화,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국학 강좌
 - 중급 이상의 한국어 강좌와 한국 문화에 대한 강좌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과
- c. 신청기관은 비자발급 및 강의와 관련하여 파견교수가 행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
- d. 강사자격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은 현지 강의어 능통자를 기본으로 하며, 한국어 강좌의 경우 한국어교육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, 이외 한국학 강좌의 경우 관련 분야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함
- e. 강의지원 연장을 신청하는 기관의 경우, 기존 파견교수 연장을 희망 시 강의평가서와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

4. 결과발표

- a. 2015. 5월 중: 강좌책임자에게 강의지원기관 선정여부 개별 통보
- b. 2015. 5월 중: 해당기관에 파견할 강의교수 국내 공모(온라인 접수)
- c. 2015. 6월 중: 심사를 통해 선발된 강의교수 선정결과를 대학에 통보

5. 강의평가서 제출

강좌책임자가 강의파견교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서를 본원으로 제출

- ※ 별도의 강의평가가 없는 기관은 강좌책임자가 강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한 강의평가서를 제출
- ※ 현지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, 공증을 거친 번역본을 첨부함

B. 학술연구

1. 지원개요

- a. 지원내용 : 학술연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
- b. 지원기간
 - 1)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함.
 - 2) 다년과제의 경우, 최대 2년 과제로 신청이 가능하나 매년 지원서 신청 기간 동안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진행의 갱신여부를 심사 받아야 함.
- * 2015년도에는 특정국가나 지역의 한국학 관련 문헌목록 및 서지사항, 홈페이지, 교육·학술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조사, 수집, 정리, 분석하는 형태의 연구 프로젝트를 제출 시 우선 고려함. 해당 프로젝트 결과물은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할 필요가 없으며, 한중연의 결과평가 과정을 통해 평가됨. 결과물은 연구기간 종료 시 제출되어야 함.

2. 신청자격

- a. 외국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
- b. 최근 4년(2011.2-2015.1) 이내 연구실적 2건 이상
 - ※ 논문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 심사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것에 한정함. 저서일 경우는 전문학술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에 한정함. 단, 학술회의 프로시딩은 포함되지 않음.
- c.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자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.
 - 1) 기존 수혜자로서 지원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 - 2) 본원, 교육부, 한국연구재단 등 국내 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결과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제재 기간 중인 자
 - 3) 국내 학술진흥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3. 연구기간: 2015. 6. 1 ~ 2016. 5. 31(1년)

4. 지원비 지급 및 회수

a. 협약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함

※ 연구비는 소속 기관으로 송금하여 중앙 관리를 거쳐야 하며, 본 사업은 별도 간접비를 지원하지 않음

b. 지원비 지급중지 및 회수 (전액 또는 일부)

- 1) 지원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
- 2) 본원의 관리지침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
- 3) 허위사실 및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았을 때
- 4) 각종 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

c. 소속기관에 유급 고용된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는 Course Buyout을 권고함. 부득이 신청할 경우 신청사유와 금액 산출 근거를 소명해야함.

<학술연구 연구비 평균 지급액>

- 북미, 일본/대만/홍콩/싱가폴, 서유럽, 대양주: 평균 15,000USD 내외
- 동유럽, 러시아 및 CIS, 남미, 중동: 평균 8,000USD 내외
- 중국, 동남아, 아프리카 등: 평균 4,000USD 내외

※ 상기 내용은 최근 3년간 지원과제의 평균치로 예산작성을 위한 참고 사항이며, 실연구비 규모는 개별 프로젝트의 성격(연구활동 범위, 참여인력 및 규모 등)을 감안하여 심사를 통해 조정하므로, 프로젝트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지원 요청액을 제시할 수 있음

5. 보고서 및 출판물의 제출

a. 보고서 제출

: 연구결과물이나 출판물이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,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한 초록을 제출하여야 함

1) 중간보고서 제출일 : 2015. 12. 31

- 6개월간의 연구진행 및 연구비 사용내역을 이메일로 제출함
- ※ 다년과제의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는 연장신청서와 함께 연구 갱신여부를 검토하는 데 사용됨

2) 결과보고서 제출일 : 2016. 7. 31

- 연구기간 종료(2016. 5. 31) 후 2개월 이내에 이메일로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논문을 제출하고, 연구지원비를 관리한 소속 기관의 예산집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

※ 소속 기관이 연구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, 예산집행내역서와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

3) 최종 출판결과물, 출판완료보고서 제출일 : 2018. 5. 31

-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SCI, SSCI, A&HCI, CSSCI, KCI 또는 SCOPUS에 수록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2부 또는 전문학술서적(심사과정이 있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서적을 말함)의 형태로 출판된 결과물(실물/PDF 파일 모두 제출) 2부 및 출판완료보고서 1부를 제출함
- 기한 내 최종 출판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, 출판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제출기한을 유예할 수 있음
- 출판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과평가를 통해 최종 처리되며, 향후 전 분야 지원사업에 신청 불가
- 연구결과물 단순 제본은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

b. 출판물 표기내용

: 출판물(단행본, 학술논문 등)에는 아래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

■ 국문표기: “이 연구는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(AKS-2015-R-000)”

■ 영문표기: “This research (or publication) was support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rant (AKS-2015-R-000)”

※ 과제번호(AKS-2015-R-000)는 선정된 후 개별 통보함.

c. 저작권

: 본 지원사업 결과물의 저작권은 해당 연구자가 소유함. 다만 본원 및 교육부는 본 사업 결과물을 비상업적이고도 학술적인 목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해당연구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사용할 수 있음

6. 결과 평가

- a. 평가방법: SCI, SSCI, A&HCI, CSSCI, KCI, SCOPUS에 수록된 학술지에 연구결과물을 게재하거나 또는 전문학술서적(자체적인 심사과정이 있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서적을 말함)의 형태로 제출할 경우 평가를 면제함
- b. 평가대상: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출판결과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과평가를 시행함
- c. 평가주관: 전문심사단 및 '해외한국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'
- d. 참고사항: 과제별로 A, B, C, D 4등급으로 평가하며, 그 결과 C급의 경우 평가일로부터 향후 3년간, D급의 경우 평가일로부터 향후 5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함.

7. 기타

- a. SCOPUS 및 CSSCI 참고 사이트
 - SCOPUS 저널 리스트 사이트
<http://www.info.sciverse.com/scopus/scopus-in-detail/facts/>
 - Chinese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(CSSCI) 수록 학술지 사이트
<http://cssci.nju.edu.cn/>

C. 학술회의

1. 지원내용

: 2015년 6월 ~ 2016년 5월 중 해외에서 개최 예정인 학술회의에 소요되는 경비(교통비, 숙박비, 장소 사용료, 논문집 발간 경비 등)

2. 신청자격

- : 외국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
- 단,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자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 - 1) 본원, 교육부, 한국연구재단 등 국내 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결과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제재 기간 중인 자
 - 2) 국내 학술진흥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3. 지원비 지급 및 회수

- a. 지원비 지급
 - : 협약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함. 단, 2016년 전반기에 개최되는 학술회의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중에 지급함
 - ※ 이 사업은 별도의 간접비를 지원하지 않음.
- b. 지원비 지급중지 및 회수 (전액 또는 일부)
 - 1) 지원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
 - 2) 본원의 관리지침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
 - 3) 허위사실 및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았을 때
 - 4) 각종 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

4. 보고서 및 출판물의 제출

- a. 보고서 제출

: 학술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,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예산집행내역서, 학술논문집 2부를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

※ 소속 기관이 연구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, 예산집행내역서와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함

※ 출판물이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출판된 경우,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한 초록을 제출하여야 함

b. 출판물 표기내용

: 출판물(학술회의 논문집 등)에는 아래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

■ 국문표기: "이 학술회의(논문집)는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
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
(AKS-2015-C-000)"

■ 영문표기: "This conference (or publication) was supported by
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rant
(AKS-2015-C-000)"

※ 과제번호(AKS-2015-C-000)는 선정된 후에 개별 통보함

c. 저작권

: 본 지원사업 결과물의 저작권은 해당 연구자가 소유함. 다만 본원
및 교육부는 본 사업 결과물을 비상업적이고도 학술적인
목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해당연구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
이 사용할 수 있음

5. 결과 평가

a. 평가주관: 전문심사단 및 '해외한국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'

b. 평가결과: 과제별로 A, B, C, D 4등급으로 평가하며, 그 결과 C급
의 경우 평가일로부터 향후 3년간, D급의 경우 평가일로
부터 향후 5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함.